의안번호	제322호
의결연월일	2021. 03. 24.

- 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 -

# 심 사 보 고 서

#### 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03.09. 예산군수

○ 회 부 일 자: 2021. 03.09.

○ 상 정 일 자: 2021. 03. 17.

제268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
### 2. 제안설명 요지(도시재생과장: 윤찬기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「건축물 관리법」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  -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단란주점영업,

유흥주점영업, 영화상영관, 비디오물감상실업, 목욕장, 노래 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고시원업 등

-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  - 구조적 손상 등으로 예산군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 등
-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  -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한 경우
-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  - 구조안전성능이 저하가 인정되는 경우
  -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소방서 요청이 있을 경우
-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  - 가설건축물, 축사, 가축시설, 작물재배사 등
-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대상을 규정함(안 제8조)
  - 지병 및 장기출장 등으로 감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
  -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등
-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  - 지역건축물관리센터는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
  -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, 제도 개선, 기술지원, 정보제공 등 업무를 수행한다
- 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  - 빈 건축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과반수 동의를 받아 평가업자 추천
  -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평가업자 선정 할 수 있다.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춘근)

○ 「예산군 건축물 관리 조례안」은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관계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# 4. 질의・답변 요지

○생 략

#### 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### 6. 심 사 결 과

○「원안가결」

#### 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